



지식경제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1. (주)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국제민주연대 등의 이의제기(2008.10.29) 관련입니다.

2. 본 건에 대하여 불임 내용과 같이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제2장 및 3장), 고용 및 노사관계(제2장 및 4장), 환경(제5장) 등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하여 현 상태에서 이의제기 대상기업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추가조사 및 증재 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다만, 동 개발 사업의 규모 및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 NCP는 대우 등 관련 기업들이 정보 공개 및 대민 이해 증진 등에 지속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4. 본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내NCP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2110-5356)

불임 : 슈에 프로젝트 조사타당성 검토 1부, 끝.

지식경제부장관



수신자 국제민주연대, (주)대우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행정사무관

송지현

과장

전결 11/27

문승욱

협조자

시행 투자정책과-539

(2008. 11. 27.)

접수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운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315

/ <http://www.mke.go.kr>

호 투자정책과

전화 02-2110-5356

전송 02-504-4816

/ celeste@mke.go.kr

/ 비공개(7)

**[주]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관련 조사타당성 검토**

1. 이의제기 개요

- 이의제기 접수일 : '08.10.29(수)
- 이의제기 대상기업 : (주)대우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KOGAS)
- 이의제기자 : ERI(EarthRights International), 국제민주연대 외 8개 단체
- 이의제기 내용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 2장 위반 : 일반정책
 -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 미공개 및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 미수렴(제 2장 1호)
 - 강제이주 등 지역 주민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제 2장 2호)
 - 가이드라인 제 3장 위반 : 정보공개
 - 미얀마 정부와 맺은 계약사항 등 프로젝트 정보 미공개(제 3장)
 - 가이드라인 제 4장 위반 : 고용 및 노사관계
 - 동 프로젝트 추진시 강제노동행위 등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책임(제 4장 1호(c))
 - 가이드라인 제 5장 위반 : 환경
 - 환경문제 관련 지역사회에 의견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일반에게 알리지 않음(제 5장 2호)
 - 동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미실시(제 5장 3호)

II. 이의제기 세부내용별 검토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2장 1호의 위반

□ 이의제기자 측 주장

- 대우 등은 슈에 천연가스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신장시키는데 실패

□ 이의제기 대상기업의 주장

- 각종 공시, 인권단체들과의 직접 면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등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개
- 또한 미얀마 E&P(Exploration&Production)사무소의 Socio Eco Coordinator를 통해 현지 방문조사 등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위해 최대한 노력 중

□ 검토의견

- 이의제기자 측 주장과 관련, 대우 등 이의제기 대상기업 측은 '00년 7월 27일 이래 수십 건의 공시를 한 바 있으며, 환경연합(2006), 국제민주연대(2008), ERI 및 SGM(2008) 등과의 면담을 개최하는 등 정보공개 활동에 노력하고 있음이 인정됨
- 나아가, 동 사는 미얀마 E&P 사무소의 지역의견 수렴활동과 함께 Socio-Economic Program*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프로젝트에 반영하고자 함이 인정되므로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라 볼 수 있음

* Socio-Economic Program

- 교육 : 22개 학교 건물 개·보수
- 보건 : 9개 health center 및 혈액저장소 건설, HIV 의료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 위생 : 식수지원시설 건설 및 개·보수

-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제기 대상기업 측이 동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가이드라인 제2장 2호의 위반

□ 이의제기자 측 주장

- 대우 등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강제이주 등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권유린행위에 공모성 책임을 지고 있음

□ 이의제기 대상기업의 주장

- 동 프로젝트는 현재 해상 탐사만 이루어졌으며, 육상 파이프라인은 아직 경로도 미정인 상태임
-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하여 경로 주변의 군 경계인력 배치를 통한 강제이주 혹은 강제 노동 등의 우려는 시기상조
- 또한 대우 등은 기존 Yadana Project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 및 지역 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

□ 검토의견

-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대우 등은 해상 탐사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의제기자 측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된 육상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중국 측이 추진할 예정(대우는 지분참여 고려 중)이고 아직 구간도 확정되지 않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제출된 자료에서 대우 등이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미얀마 정부와 공모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과거 Yadana Project에서의 Total社 및 Unocal社의 사례만을 가지고 대우 등의 가이드라인 위반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됨
- 진출국 정부가 과거 또는 현재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3. 가이드라인 제3장의 위반

□ 이의제기자 측 주장

- 미얀마 정부는 국영회사인 MOGE를 통해 프로젝트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바, 대우 등은 파이프라인 보안 내지 기타 책임 분담, 지분 내역 등과 관련하여 미얀마 정부와 맺은 계약들을 공개해야 함

□ 이의제기 대상기업의 주장

- 해상 파이프라인 및 육상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프로젝트 관련자들 간에 협의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미얀마 정부의 승인 하에 진행될 예정임
- 단, 미얀마 정부와 체결한 계약 세부내용은 비밀준수조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

□ 검토의견

- 가이드라인 제 3조 및 관련 주석은 정보공개 요건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비합리적일 정도의 행정적 또는 비용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되며, 그 경쟁상 입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이나 법령에 의하여 다국적기업이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사안의 경우에도 대우 등이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비밀준수약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4. 가이드라인 제4장 1호 (c)의 위반

□ 이의제기자 측 주장

- 슈에 프로젝트 추진시 과거 Yadana Project에서 일어난 강제노동행위 등 가이드라인 위반사항과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바, 대우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이의제기 대상기업의 주장

- 대우의 미얀마 E&P 사무소가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2007)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측 수요 기업(CNPC)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

* Code of Conduct(Code of Corporate Conduct and Ethics)

- 개발 생산단계에서 행동의 기준
- UN 글로벌 컴팩, 리우 선언, 세계인권선언 등의 반영
- 메이저급 석유회사의 COC와 동일한 수준

□ 검토의견

- 가이드라인 제4장 1호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서 스스로 그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서 또는 타인과의 공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동 프로젝트의 경우 이의제기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우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Code of Conduct를 제정하여 직원들이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 나아가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대우 등이 현 단계에서 위 가이드라인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노동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임

5. 가이드라인 제5장 2호의 위반

□ 이의제기자 측 주장

- 프로젝트가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우 등은 지역사회에 의견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일반에게 알리지 않았음

□ 이의제기 대상기업의 주장

- 프로젝트가 지역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하여, 현재 Upstream의 EIA는 이미 마무리 되었으며, Midstream 1(해상 파이프라인 관련 구간)의 EIA는 마무리 단계

-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권문제들의 사전 예방 및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 미얀마 E&P사무소의 Socio Eco Coordinator를 통해 현지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NGO들과 체계적인 의견 교환 진행중

□ 검토의견

-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하여 대우 등은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EIA)를 이미 수행 중에 있으며, 사회영향평가(SIA) 역시 사업자 선정 작업 중에 있어 곧 수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
- 이와 함께, 육상 파이프라인 구간의 공사는 동사가 시행 주체가 아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io Eco Coordinator를 통한 의견수렴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사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6. 가이드라인 제5장 3호의 위반

□ 이의제기자 측 주장

- 프로젝트가 환경, 건강,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EIA)를 미 실시

□ 이의제기 대상기업의 주장

-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2006년 초부터 EIA를 실시
- 현재 Upstream 부분의 EIA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사회영향평가(SIA)의 수행을 위해 업체 선정 중

□ 검토의견

- 동 프로젝트와 같은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채굴 및 운반과 판매 등 개발 행위에 있으며, 이러한 개발행위 이전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동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대우 등은 ERM을 통하여 개발 단계에 들어가기 전인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Upstream 부분의 평가는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사회영향평가(SIA)의 수행을 위해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바,
-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의제기는 수용하기 어려움